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76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북 도민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은 주민의 감사청구사항, 집단민원 발생사항, 도의회가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안 제2조)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재직자,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함(안 제5조)

-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7조)

3. 의안 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의견 없음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민감사관(이하“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의 ‘주민의 감사청구’ 사항
2. 집단 민원발생 사항
3. 도의회가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②도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북도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도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충청북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5. 기타 도민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정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5조(감사실시)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민감사관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